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1/ 14 통권 176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 01.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 1
- 02. 부가가치세 신고 시 18
유익할 사항
- 03. 주요 세법 개정내용 22
- 04. 부가가치세 신고 34
관련 문의
- 05.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45
문의사항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원천감액하는 금액 구분〉

개념 구분	재화·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이유와 포함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제외)	재화·용역 공급시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조건에 따라 일정액 사전감액
매출할인 (제외)	공급대가를 약정일 전에 받음에 따른 기간이자할인금액
매출환입 (제외)	공급 후 반품, 불합격, 환입, 인수 거부된 금액
파손·멸실 (제외)	공급받는 상대방에 재화·용역이 도달되기 전의 파손·훼손·멸실금액
연체이자 (제외)	공급대가의 지급지연관련 연체기간이자금액
마일리지 (제외)	자기 마일리지 공급가액은 제외됨(기타마일리지는 공급가액임)
국고보조금 등 (제외)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안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등
용기·포장비용 (제외)	반환조건으로 공제된 금액대로 공급하는 용기대금 포장비용
종업원봉사료 (제외)	용역대가와 구분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적용역봉사료
관세환급금 (포함)	수출대가의 일부로서 계산되는 관세환급금 등
판매장려금 (포함)	판매일정기간의 수급,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손금 (포함)	재화·용역 공급후의 공급대금 일부의 대손금 등(대손세액 공제도 적용)
하자보증금 등 (포함)	건설용역대가의 일부로 계산되는 하자보증금·유보금 등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 국세청, 2026. 1

0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가. 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법 §48)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 * . 4. 13. 폐업한 경우

- * (과세기간) 202 * . 1. 1~ 202 * . 4. 13.
- * (신고·납부기한) 202 * . 5.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흐름

1)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9)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대리납부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1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바
예정고지세액		사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자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차
가산세액		카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2)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매입액(공급대가) ×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다
예정 부과(신고) 세액		라
가산세액		마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마.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 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유형별 제출 서류〉

사업자구분	제출대상 서류
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12. 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 관리업) 13.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14. 현금매출명세서(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15.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 16. 사업양도 신고서(사업 양도 시) 17.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8.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9.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2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2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2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23.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현금매출명세서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건물관리명세서
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 제 신고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 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 서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환급 신고 등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 세 율 적 용 대 상	첨 부 서 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 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 수출대행계약서 사 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서 외국 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 금증명서(위탁가공무역방식 수 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 도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 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 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 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 용장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대한적십자사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 포함 작성)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외화입금증명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화주가 내국인인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서류(B/L)]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제33조 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은 외화입금증명서에 같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 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 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 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 급기록표, 개별소비세법 시행 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 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석 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 급명세서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행 선 (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와 세관장에게 제 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 (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 선(탑승) 신고수리서 또는 선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 청구서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 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 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상시 주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 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24 ① 1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 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 공급기록표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관광알선용역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 우 관광알선수수로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 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 판매 기록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방위산업물자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월별판매액합계표 임협·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환급신청서, 농·어민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및 환급·송금명세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등록자에 한함)·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구체적인 요령은 ‘전자신고·납부 요령’편 참조)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우측중앙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선택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우측중앙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이용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해당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상단의 ‘이대로 신고하기(무실적 신고 포함)’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1) 또는 보이는 ARS(☎1544-9944)2)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1)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 2)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클릭하여 「파일 변환신고」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 홈택스 ⇒ 자료실 ⇒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25. 7. 1.부터 7. 25.까지 ⇒ 06 : 00 ~ 다음날 새벽 01 : 00, 1시간 연장
단, 7.10. / 7.25.(신고마감일) ⇒ 06 : 00 ~ 24 : 00
-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가가치세 납부 (구체적인 납부요령은 80쪽 참조)

1)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KB국민·삼성·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이용시간 : 07:00~23:30

2)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 은행 CD/ATM기에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기에서는 해당 건의 납부세액을 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만 가능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CD/ATM기 이용가능시간 (연중무휴)

3) 신용카드 납부

-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0:30 ~ 23:30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4) 모바일 납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KB국민·삼성· 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이용시간 : 07:00 ~ 23:30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공과금/국세 ⇒ 국세납부 ⇒ 조회납부/입력납부를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동가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종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⑦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⑧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자. 부가가치세의 환급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 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외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차. 기한 후 신고

-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거나 조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카.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

1)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 공급가액 × 2%(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1%) →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 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 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 ×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공급가액 × 0.5%

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0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가.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주요세법 해석사례 31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제조	과·면세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4-법규부가-3968(2024.12.31.)
건설	공급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한 토지가액(「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률을 적용)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종전 토지소유자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995(2024.12.24.)
건설	과·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서면-2024-법규부가-3964(2024.12.13.)
교육	과·면세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4-법규부가-3966(2024.11.27.)

수출	영세율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서면-2024-부가-2056(2024.11.26.)
제조	과·면세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4-법규부가-3972(2024.11.21.)
제조	과·면세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4-법규부가-3961(2024.11.21.)
제조	과·면세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4-법규부가-3969(2024.11.21.)
건설	매입세액 공제	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636(2024.11.5.)
소매	매출에누리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4-법규부가-0470(2024.10.30.)
제조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이하 “원재료 무상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619(2024.09.12.)
충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사전-2024-법규부가-0542(2024.08.27.)
수출	영세율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4-법규부가-0449(2024.8.30.)



출판	과·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24-법규부가-0076(2024.07.23.)
임대	매입세액 공제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252(2024.7.19.)
도소매	과세대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수강생 등에게 다이빙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468(2024.07.19.)
제조	과·면세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를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3442(2024.7.4.)
제조	과·면세	계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4-법규부가-1938(2024.6.25.)
제조	과·면세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367(2024.6.25.)

소프트웨어	과세대상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24.06.14.)
도서	과세대상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서 정점 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258(2024.05.31.)
공통	사업양도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353(2024.05.30.)
수출	영세율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4-법규부가-0084(2024.5.30.)
수출	영세율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5.8.) 기준-2023-법규부가-0159(2024.5.14.)
건설	국민주택 건설용역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904(2024.4.9.)
공통	세금계산서 발급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24.04.29.)
수출	영세율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사전-2024-법규부가-0197(2024.04.25.)
공통	과세대상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2024.04.12.)



공통	가산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3-소득-0281(2023.11.21.)
제조	과·면세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80(2024.3.29.)
공통	과세대상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3299(2024.01.31.)

03.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①(5))

가. 개정취지

- 동물 질병치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 혈액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좌 동) ☐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 한정

다. 적용시기

-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63)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대상) ❶ 또는 ❷ ❶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미만 개인사업자 ❷ 신규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4.12.31. 발급분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7.12.31.

3.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 신설 (부가법 §48 등)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 수시부과 세액은 예정신고, 예정고지 및 확정신고 시 공제 ○ (부과사유) ❶ 또는 ❷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 ❶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 모·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5)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부과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이 확정신고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 간 개시일

다. 적용시기

-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법 §60·68의2)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 사업자 미등록 : 1%* * 간이과세자 : 0.5%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 1%* * 간이과세자 : 0.5% ☐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 3%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 2%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 1%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0.5%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 (좌 동) ☐ 2%* * 간이과세자 : 1% ☐ (좌 동)

다. 적용시기

-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부가법 §8②)

가. 개정취지

- 든든전세주택 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 예외 대상 확대 ☐ (좌 동)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 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 가>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6.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 (부가령 §11③)

가. 개정취지

- 사업장의 임대차·전대차 관련 법적 분쟁 방지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 (허가·등록·신고 업종) 허가·등록·신고확인 증 사본 ○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 가> ○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등) 해당 부분의 도면 등	☐ 첨부서류 추가 ☐ ○ (좌 동) ○ (사업장 전차한 경우) - 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있는 경우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 동)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 범위 확대 (부가령 §19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상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 ①~② 각각 재화의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설날·추석 등*과 관련된 재화 * 창립기념일, 생일 등 포함 <신 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상 확대 ☐ ○ (좌 동) ☐ ①~③ 각각 재화의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좌 동) ②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③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 (부가령 §40①)

가. 개정취지

- 금융·보험 용역 면세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등 <추 가>	☐ 면세 범위 명확화 ☐ ○ (좌 동) ☐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

9.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 (부가령 §69②)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 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위탁·대리 판매 등) 수탁자·대리인이 재화 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 등 ☐ (합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 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 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신 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신 설>	☐ 특례 사유 추가 ☐ (좌 동) ☐ (분할·분할합병)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 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 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 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부가법§75①, 부가령 §121②)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❶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 앱 마켓사업자 및 외국플랫폼(비거주자 또 는 외국법인) 추가 ☐ (좌 동)

② ①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추 가> <추 가> ○ (자료) 월별 거래명세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좌 동) - 앱 마켓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2(13) :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③ ①-②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좌 동)
---	--

다. 적용시기

- '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학용 등 수입재화 면세 관련 연구기관 범위 명확화 (부가칙 §40(7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과학용 등 수입재화 면세 적용 연구기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특정연구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 <추 가>	□ 연구기관 범위 현행화 ○ (좌 동) ○ 「우주항공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12.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 등)

가. 개정취지

- 농민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 - 단, 시설작물재배업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 제외 * 콩나물재배업	☐ 지원대상 확대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①1호)

가. 개정취지

- 영농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대상 ☐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등 ☐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등 - 단, 등유, 중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제외 대상 확대 ☐ (좌 동) ☐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등 - 단,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4.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가. 개정취지**

- 영농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 벌통, 채밀기(採蜜器) ☐ 소초(巢礎)*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 * 꿀벌이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밑자리	☐ 대상 확대 ☐ (좌 동) ☐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각 개별 품목을 영세율대상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가. 개정취지**

- 영농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 ☐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현행화

(조특법 §106⑤, 조특령 §106¹⁸·조특칙 §48⑤ 신설)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 제외* 예외 업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등(부가법 §61①) ☐ 개인택시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등 ☐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 화물운송업	☐ 조문정비 ☐ (좌 동) ☐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이용하지 않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17.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 조특령 §106의12)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 미지급 경감세액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 (추징금액) ❶ + ❷ + ❸ ❶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❷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미지급기간* (일) × 0.0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익일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❸ 가산세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40% <신 설>	○ (좌 동) - 운수종사자의 운수종사자의 사망, 거주불 명 등록으로 경감세액 미지급시 가산세 (❹) 추징 배제
---	--

다. 적용시기

- '25.1.1.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8.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108의3, 조특령 §106의15, 조특칙 §48의7)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송객용역 정의)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❶ 면세점·여행사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전용계좌 개설 - 상호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문구 표시 - 단일 거래계좌를 복수 사업장에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별 복수 거래계좌개설 가능 ❷ 매입자는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금* * 미입금 가산세 : 부가가치세액 × 미입금기간 × 0.022%

	㉓ 지정금융회사등은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기한(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 ○ (환급보류) 송객용역 매출액/매입액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 후 최대 6개월간 환급 보류 - 다만, 환급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결손처분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국세채납·전용계좌미이용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제외 ○ (매입세액 환급 범위)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은 매출자에게 매출세액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환급 가능
--	--

다. 적용시기

- '25.7.1. 이후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관광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 (대상) 호텔업* * 「관광진흥법」 §3①(2) 가목	☐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 (좌 동) ○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법」 §3①(2) 나목

다. 적용시기

- '25.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 (조특령 §105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절차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 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대상)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 (환급절차) 직접환급 또는 환급대행 신청 - (직접환급) 자동차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등 → 신청기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 (환급대행) 환급대행신청서 등을 환급대행자에게 자동차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환급대행신청을 받은 자가 판매수탁자(대리점)인 경우는 신청일 다음날까지 판매위탁자(제조사)에게 환급대행 신청 ▪ 환급대행자*는 환급대행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판매수탁자는 제외 → 신청기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 세무서에서 받은 환급세액을 5일 이내에 지급 ☐ (부정환급시* 제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 * 환급받은 자동차의 용도와 사용·양도, 세금계산서 부정발급·기재 등 *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0.022% - 자동차 폐차·차령초과·멸실, 면허의 실효·취소, 사업의 양도·폐업 등의 경우 추징 제외

다. 적용시기

- '25.1.1.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4.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 현금매출명세서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A.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A.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란에 기재할 사항은?

- A.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 A.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1%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text{정기예금이자율}(3.1\%) \times \frac{\text{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text{일}}$$

-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 '25.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1~6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 A.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



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만 적용

■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A.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 기간 : 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세무서에서 받은 확인서 제출)
-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 공제·감면세액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A.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사항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9.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A.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15번 참고)

◆ 의제매입세액 공제(11번 참고)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일반사업자) 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 제조업 중 중소기업(조특령 §5①)·개인인 4/104, 법인은 2/102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 6/106)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12번 참고)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 시)

◆ 채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전자신고세액공제(13번 참고) : 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1,000

-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6.12.31.까지는 1.3%, 15번 참고)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11.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A.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2억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55%	반기매출액의 65%	제외	반기매출액의 50%

구분	개인 음식점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반기매출액 1억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70%	반기매출액의 75%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재(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frac{3}{103}$

• 공제한도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frac{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성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times \frac{10}{110}$

-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3.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Rightarrow$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Rightarrow$ 연간 750만원

14.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대손세액공제 제도>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times \frac{10}{110}$

-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1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A.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단, '26.12.31.까지는 1.3%)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공급대가) × 0.5%



■ 현금영수증

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A.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A.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부가령 §88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

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3)

19.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A.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A.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예정신고

21.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나의홈택스」- 나의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A.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에서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입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23.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 경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2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부가가치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7일경 제공 예정
- 4~6월 매출자료 : 7월 17일경 제공 예정
- 7~9월 매출자료 : 10월 17일경 제공 예정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7일경 제공 예정

25.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A.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5.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발급 방법은?

- A.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발급 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2021년 2월부터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발급이 가능

2.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 A.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입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입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입동의 방법>

-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입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② 온라인 수입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세무대리인 수입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세무대리인이「홈택스」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공통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에서 [수입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입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입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25.7.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25.7.11.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25.7.11.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발급목록 조회] 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A.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는?

A.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2024.7.1.부터 직전 연도('23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23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4. 7. 1.~ 계속

6. '24.12.21.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5.2.24. 일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A.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5.2.24.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시기는 '25.2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5.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A.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9.1.1. 이후 거래분부터)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발급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전송 * (예) '24.4.5. 발급한 경우 '24.7.25.까지 전송	0.3%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미전송 * (예) '24.4.5. 발급한 경우 '24.7.25.까지 미전송	0.5%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부가령 §75조 7호)

-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부과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A.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A.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지 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등

- 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11.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더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가 면제 됩니다. 또한, '22.7.1.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7.12.31. 발급분 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23.7.1. 발급분부터 발급 세액공제 적용

13.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 A.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 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발급 후 하단의 새로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2일(금)	1월 5일(월)	1월 6일(화)	1월 7일(수)	1월 8일(목)
미 달 러 (USD)	1434.90	1442.10	1446.80	1445.70	1448.30
일 본 엔 (JPY)	915.06	919.79	924.21	923.06	924.46
영 국 파 운 드 (GBP)	1933.31	1940.20	1958.61	1951.98	1949.19
캐 나 다 달 러 (CAD)	1045.73	1049.53	1050.61	1046.62	1044.95
홍 콩 달 러 (HKD)	184.31	185.09	185.84	185.64	185.99
위 안 화 (CNH)	204.76	206.92	207.52	207.26	207.47
유 로 화 (EUR)	1685.73	1688.99	1695.50	1689.95	1691.18
호 주 달 러 (AUD)	957.51	964.55	971.38	974.55	973.55
싱 가 폴 달 러 (SGD)	1115.79	1120.77	1127.80	1128.75	1129.1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53.86	355.72	355.26	357.23	356.90